

# 우체국 마미든든 적금 특약

## 제1조 【적용범위】

‘우체국 마미든든 적금’(이하 ‘이 예금’ 이라 한다)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‘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’, ‘적립식예금 약관’, 조세특례제한법,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.

## 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. (1인 1계좌)

## 제4조 【가입 및 해지】

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.

## 제5조 【가입기간】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.

## 제6조 【저축방법】

-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.
-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,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.

-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.

### 제7조 【적용이율】

-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go.kr)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,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.
-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.4%p를 제공한다.
1. 자녀수 해당 시 : 1명 연 0.2%p / 2명 연 0.3%p / 3명 이상 연 0.4%p
  2. 일하는 기혼 여성일 경우 : 연 0.2%p
  3. 결혼이민여성, 한부모 가정의 여성, 여성 장애인일 경우 : 연 0.4%p
  4. 우체국 「아이LOVE적금」 보유 시 연 0.1%p 또는 「아이LOVE적금」의 '미래고객 우대이율' 해당 시 0.3%p
  5.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해당 시 : 연 0.1%p
  6. 이 예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 해당 시 : 연 0.2%p

(단위 : 연 %p )

구 분		제공조건	우대이율
자녀 우대		자녀수에 따라 우대 ( 1명 : 0.2 / 2명 : 0.3 / 3명 이상 : 0.4 )	0.2 ~ 0.4
여성 우대	일하는 기혼 여성	경제활동을 하는 혼인 중인 여성	0.2
	나눔 우대	결혼이민여성, 한부모 가정의 여성, 여성 장애인	0.4
거래 우대	우체국 적금 가입 (① 또는 ②)	① 신규 가입 시 '우체국 아이LOVE적금' 보유	0.1
		② 신규 가입 시 '미래고객 우대이율'을 적용받는 '우체국 아이LOVE적금' 보유	0.3
	체크카드 이용	우체국 체크카드 이용	0.1
	적금 자동이체 실적	적금 자동이체 실적	0.2

※ 계약기간 (가입일~만기일) 중 결혼, 출산 시에도 (자녀우대, 일하는 기혼 여성) 우대금리 제공

※ 여성우대 (일하는 기혼 여성, 나눔 우대)는 여성 고객에 한하여 제공

-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epostbank.go.kr)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(약관변경) 절차를 갈음한다.

## 제8조 【이율적용방식】

-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.
- ② 「자녀 우대」는 계약기간(가입일~만기일) 중 예금주의 총 자녀수(태아포함) (1명 : 연 0.2%p, 2명 : 연 0.3%p, 3명 이상 : 연 0.4%p)에 따라 가입시점 또는 만기해지 시점에 확인하여 적용한다.

- ③ 「일하는 기혼 여성 우대」는 계약기간(가입일~만기일) 중 예금주가 혼인 중인 여성이면서 경제활동 사실이 있는 경우로 가입시점 또는 만기해지 시점에 적용한다.
- ④ 「나눔 우대」는 신규 가입일 기준 예금주가 결혼이민 여성, 한부모 가정의 여성, 여성 장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- ⑤ 「우체국 적금 가입 우대」는 신규 가입 시 예금주 본인, 자녀, 손자·손녀 중 우체국 「아이LOVE적금」을 보유한 경우 또는 「아이LOVE적금」 우대금리 항목에서 ‘미래고객 우대이율’을 적용받는 경우에 적용한다.
- ⑥ 「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우대」는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 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총 6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.
- ※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(신용결제 제외)
- ⑦ 「적금 자동이체 실적 우대」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계약기간(가입일~만기일) 중 자동이체 납입 횟수가 80%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.

## 제9조 【이자계산】

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,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.

### 제10조 【이자지급방식】

-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.
-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(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)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.

### 제11조 【부가서비스】

- ①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 시 우체국쇼핑 할인쿠폰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 주요내용

구 분	주요내용
쿠폰혜택	○ 우체국쇼핑 이용 시 3,000원 할인서비스 제공
제공시기	○ 이 예금 가입일 다음월 5영업일 이내에 발송
제공조건	○ 이 적금 가입월에 자동이체 약정(월 30만원 이상)을 하고 쿠폰 제공일 까지 적금 및 자동이체 약정 유지고객 대상
제공방법	○ 고객정보의 휴대폰 번호로 할인쿠폰 안내 메시지 (쿠폰번호) 발송
사용방법	○ 우체국쇼핑 ( <a href="http://mall.epost.go.kr">http://mall.epost.go.kr</a> ) → 할인쿠폰 사용등록 → 할인 쿠폰 번호 입력 (등록)
등록기한 사용기한	○ 등록기한 : 쿠폰 발송월 말일까지 ○ 사용기한 : 쿠폰 등록일 ~ 등록일 이후 3개월 이내
유의사항	○ 우체국쇼핑 이용 시 인터넷 우체국 회원가입 필수 ○ 쿠폰은 1회 등록, 사용 가능하며 쿠폰 분할사용 및 재사용 불가 ○ 이 적금 중도해지 후 재 가입 시 부가서비스 제공 불가

- ③ 부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우체국 및 우체국과

제휴한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그 변경 내용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epostbank.go.kr)에 게시한다.

### 제12조 【중도해지】

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
### 제13조 【만기 후 해지】

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.

### 제14조 【특별중도해지】

-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,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예금은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.
-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또는 예금주 배우자의 주택구입, 입원, 출산, 유학, 결혼, 이민, 퇴직,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주택구입 : 등기부등본, 매매계약서
  2. 출산 : 산모수첩, 의사소견서, 출생증명서
  3. 입원 : 입원 확인서 (2주 이상)
  4. 유학 : 입학 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
  5. 결혼 :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, 혼인신고서
  6. 이민 : 해외이주 신고확인서
  7. 퇴직, 폐업 : 퇴직증명서, 폐업사실증명서
- ※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서류 추가 제출

#### 제15조 【분할해지】

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.

#### 제16조 【과세구분】

이 예금은 일반과세,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.

#### 제17조 【기타】

-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,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.
- ② 이 예금은 양도, 승계가 불가하다.

## 부 칙

이 특약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